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개정(안)에 따라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, 「소득세법」 개정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인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 소득의 산정기준을 소득세법 규정과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반영하여 구체화 함 (안 제44조)
- 나. 주택임대사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소득 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정비 (별표1의2 제1호 나목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0. 8. 21. ~ 9. 17.)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를 제44조의2로 하고,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조(소득월액 산정 소득의 기준 및 범위) ①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으로,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월액 산정 대상으로 한다.

②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(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의 합계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주택임대소득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차감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2항의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같은 항 후단에 규정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④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20조의3제3항의 연

금소득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같은 항 후단에 규정된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⑤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으로 한다.

별표1의2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소득(이하 이 표에서 “사업소득”이라 한다)이 없을 것. 다만,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- 1)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(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
- 2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
- 3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41 조·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)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
- 4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4조(소득월액 산정 소득의 기준 및 범위) ①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으로,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월액 산정 대상으로 한다. ②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2항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주택임대소득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차감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. ③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2항의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같

현행	개정안
	<u>은 항 후단에 규정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 ④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20조의3제3항의 연금소득금액으로 한다. 다만, <u>같은 항 후단에 규정된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 ⑤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21조제2항에 <u>따른 기타소득금액으로 한다.</u>
<u>제44조</u> (생략)	<u>제44조의2</u> (현행 제44조와 같음)